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79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 문진석·한정애·이건태

박용갑・박성준・이정문

이광희 · 양문석 · 백혜련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 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 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 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 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 31일----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 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 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 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 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 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 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1.	• 2.	(생	략)
- •	┙.	\ 0	1/

_	_		~ .
(2)	• (3)	(섀	략)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